

행정자치부

훈계·시정 요구

제 목 하수관로 설치공사 준공 부적정

기 관 명 부산광역시(본청, 부산○○공사)

훈계대상자 ① 남구 ○○○○국 ○○과(전 부산광역시 ○○○○과) 지방○○○
○○(전 지방○○○○) ○○○

② 부산○○공사 ○○○○본부 ○○○○처(전 ○○○○○○처) 토목
○급 ○○○

내 용

지방○○○○○ ○○○은 2014. 2. 3.부터 2017. 2. 2.까지 ○○○○국 ○○
○○과에서 “하수관거신설(확충)공사[○○처리구역(○○○일원1)]”의 실무담당자
로, 토목○급 ○○○은 2014. 8. 6.부터 2015. 6. 30.까지 ○○○○본부 ○○○○
○처에서 “○○○관광단지 조성사업 내 하수관로 설치공사”의 실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부산○○공사 「취업규정」 제6조에 따라 직원은 법령과 공사의 제규정을
준수하며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고,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공사감독자는 감독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094호)」 제4조의 규정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계획·설계·발주·감리·시공·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감리용역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기타 감리전문회사와 계약으로 정한 사항 등 감리용역 발주자로서의 감독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동 지침서 “제5장 기성 및 준공검사 관련 감리업무”의 제57조의 규정에 따르면 발주청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기성 및 준공검사 과정에 입회토록 하여 기성 및 준공 검사자가 계약서, 지방서, 설계서 등 관계 서류에 따라 기성 및 준공 검사를 실시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 시 시설물 인수기관, 유지관리기관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성 및 준공검사에 입회·확인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1. 하수관거 정비사업 준공 부적정(○○○○과)

부산광역시 ○○○○국 ○○○○과는 시설연장 14.165km의 “하수관거신설(확충)공사[○○처리구역(○○○일원1)]”를 추진하면서 2010.5.31. ○○건설(주)⁷⁹⁾(구 ○○○○건설(주)) 외 1개사와 11,345백만 원으로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⁸⁰⁾하고, 2010.7.6. (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와 1개사와 “하수관거신설(확충)공사[○○처리구역(○○○일원1)] 전면책임감리용역” 계약을 체결⁸¹⁾하여 시행하던 중 하수관로 정비공사 시공사인 ○○건설(주) 외 1개사로부터 제출받은 하수관로 내부를 촬영한 CCTV성과품을 감리업체로부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받아 검수한 후 2015. 5. 31. 동 사업을 준공하였다.

가. 하수관로 품질확인(CCTV 검사) 부적정

정부합동감사 시 시설공사 준공 당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CCTV조사 성과품을 확인한 결과, 하수관로 3009-5~3009(유리섬유복합관, D=250mm)에서 이음부가 파손되는 등 부적합하게 시공된 부위 5개소가 확인되었으며, 감사 시 하수관로 내부를 CCTV로 현장 조사한 결과 준공 시와 동일하게 시공 부적합 부위를 확인하였다.

【표 1】 CCTV 조사결과 부적합 시공 현황

79) ○○○○건설(주)에서 ○○건설(주)로 사업자명 변경(2013.10.22.)

80) 계약금액 11,345백만 원, 계약기간 2010.05.31.~2013.05.30.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액 11,859백만 원, 계약기간 2010.05.31.~2015.05.31.으로 2015.08.10. 변경계약을 체결

81) 계약금액 858백만 원, 계약기간 2010.07.07.~2013.07.06.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액 929백만 원, 계약기간 2010.07.07.~2015.05.31.으로 2015.03.17. 변경계약을 체결

구 간	준공 CCTV성과품		감사 시 현장조사	
	촬영일시	분석결과	조사일자	조사결과
3009-5~3009	2015.1.21.	이음부 결함(관 파손)	2017.3.13.	이음부 결함(관 파손)
3047	-	이음부 결함(단차)	2017.3.13.	이음부 결함(단차)
4102-1~4102	2014.5.21	관 표면 손상	2017.3.13.	관 표면 손상
4102~4103	2014.5.21	이음부 결함(침입수)	2017.3.13.	이음부 결함(침입수)
5008-1	-	관파손 및 변형	2017.3.13.	관파손 및 변형
계		5개소		5개소

나. 하수관로 품질확인 대가 지급 부적정

“하수관거신설(확충)공사[○○처리구역(○○○일원1)]”를 추진하면서 하수관로의 적정 시공여부 점검을 위한 CCTV조사 대상 14,156m 중 1,806m를 조사(촬영)하지 않았음에도, 계약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공사를 준공하여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품질검사 대가 4,408천원을 과다하게 지급하였다.

【표 2】 하수관로 품질확인 대가 과다 지급 현황

(단위 : 원)

구 분	단가	준공 내역		계약 이행		차액 (②-①)
		수량	①금액	수량	②금액	
수밀시험	129,360 ~189,873	244	33,663,958	247	34,081,697	417,740
CCTV	1,921	14,156m	27,193,676	12,350m	23,724,926	△3,468,750
간접공사비	44.42%	1식	27,034,821	1식	25,677,702	△1,357,119
합 계			87,892,455		83,484,325	△4,408,129

※ 부산광역시 ○○○○국 ○○○○과 제출자료 재구성

부산광역시 ○○○○국 ○○○○과는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등에 따라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기성 및 준공검사 과정에 입회토록 하여 기성 및 준공 검사자가 계약서, 시방서, 설계서 등 관계 서류에 따라 기성 및 준공검

사를 실시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했음에도, 준공시 시공의 적정성 여부 및 책임감리용역 등의 계약내용 이행여부에 대한 검수·확인 등의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여 하수관로 품질이 부적정한 상태로 시설공사를 준공하였고, 하수관로 품질검사 대가 4,408천 원을 과다하게 지급하였다.

2. 도시개발사업 내 하수관로 설치공사 준공 부적정(부산○○공사)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474호)」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발주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설계 및 시공기준과 별표2의 건설공사 품질시험 기준을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제10조제2항에 따라 발주자는 시공자가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되어 있다.

「공공하수도 설치사업 업무지침」에 따르면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관로 설계 시 시공이나 사업을 준공할 때 필요한 각종 검사를 필히 실시하도록 시방서에 언급해야 하며, 품질관리를 위하여 경사 및 수밀검사, CCTV 및 연막 조사 등의 품질검사 대가를 반영⁸²⁾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품질관리를 위한 수밀검사 및 CCTV 조사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분리 발주하거나 직접 검사⁸³⁾하여야 한다.

부산○○공사 ○○○○본부 ○○○○○처는 “○○○(○○○○)관광단지 조성사업”⁸⁴⁾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광단지 조성공사”를 2010.3.4. ○○○○

82) 하수관거 표준시방서에 따라 시공단계에서는 오수관로 전체에 대해 경사 및 수밀 검사, CCTV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우수관로 전체에 대해서는 경사검사, CCTV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준공단계에서는 오수관로 및 배수설비 가구의 5%에 대해 수밀검사, CCTV 및 오점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함

83) 환경부 하수67712-549호(2003.5.22.)로 하수관거정비공사 CCTV검사 및 수밀검사를 분리발주하거나 공공하수도관리청에서 직접검사하여 부실공사 방지를 지자체에 통보

○○○(주) 외 2개사와 64,439백만 원으로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⁸⁵⁾하였으며, 2010. 3. 18. (주)○○ 외 3개사와 4,623백만 원으로 전면책임감리용역 계약을 체결⁸⁶⁾하여 사업을 진행하였다.

정부합동감사 시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포함된 공공하수도시설의 시공 및 품질관리 현황 등을 확인하고자 조성사업에 설치된 시설물 현황을 조사한 결과, 동 사업의 준공내역서에 따르면 공공하수도 시설물은 오수관로 12,326m, 압송관로(오수) 5,756m, 우수관로 11,942m, 오수중계펌프장 2개소, 맨홀펌프장 5개소 등이 설치되었다.

가. 하수관로 품질검사 누락 및 대가 지급 부적정

「공공하수도 설치사업 업무지침」 등에 따라 하수관로 시공 후 품질검사 시 시공단계에서는 신설 오수관로 전체구간에 대한 수밀시험(압송관로는 수압시험) 및 CCTV 조사를 실시하고, 신설 우수관로는 전체구간에 대하여 CCTV 또는 육안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관광단지 조성공사”의 오수관로 품질검사 시 품질시험 대상관로 약 29.8km 중 CCTV조사 661m, 수밀시험 27개소, 수압시험 1,098m(5회)를 실시하지 않았고, 우수관로 품질검사 시 품질시험 대상관로 약 11.9km 중 CCTV조사 106m, 육안조사 2,906m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관광단지 조성공사” 준공내역서에 포함된 품질검사 대가지급 내역을 검토한 결과, ○○○○○○○(주) 외 2개사가 오수관로 수밀시험 27개소 및 수압시

84) ○○○관광단지 조성사업현황

- 위 치 : 기장군 ○○읍 ○○·○○리 일원, 사업기간: 2006~2019년
- 사업규모 : 관광단지 조성 366만㎡(테마파크, 호텔, 복합쇼핑몰, 골프장 등)
- 사업비 : 9,144억 원(보상비 6,058억 원, 공사비 등 3,086억 원)
- 주요 공사내용 : 관광단지 조성공사, 진입도로 개설공사, 해안관광도로 개설공사 등

85) ○○○관광단지 조성공사 : 최초에는 공사비 41,206백만 원, 계약기간 2010.3.5.~2013.12.31.으로 계약체결, 최종에는 공사비 64,439백만 원, 계약기간 2010.3.5.~2015.6.30.으로 변경계약

86) 책임감리용역 : 최초에는 용역비 3,141백만 원, 계약기간 2010.3.25.~2013.5.24.으로 계약체결, 최종에는 용역비 4,623백만 원, 계약기간 2010.3.25.~2015.6.30.으로 변경계약

험 5회(1,098m), 우수관로 CCTV조사 106m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지 않은 품질검사에 대한 대가 5,885천 원을 과다하게 지급하였다.

【표 3】 ○○○관광단지 하수관로 품질검사 현황

구 분			관련규정상 검사기준	품질검사 대상현황	품질검사 실시현황	품질검사 미실시현황
시공단계	오수	CCTV조사	전체관로 대상	11,682m	11,021m	661m
		수밀시험	전체관로 대상	252개소	225개소	27개소
		수압시험	압송관로 대상	5,756m	4,658m	1,098m
	우수	CCTV 조사	800mm 미만	9,036m	8,930m	106m
		육안조사	800mm 이상	2,906m	-	2,906m

※ 부산○○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표 4】 하수관로 품질검사 대가 과다지급 현황

(단위 : 원)

구 분	단가	준공내역		계약이행		비고 (②-①)
		수량	①금액	수량	②금액	
수밀시험	116,854 ~ 181,769	252	30,764,481	225	27,808,025	△2,956,456
수압시험	84,556 ~ 422,788	31	7,916,712	26	6,754,041	△1,162,671
CCTV	1,815	9,036	16,400,340	8,930	16,207,950	△192,390
간접공사비	순공사비의 26%	1식	23,516,687	1식	21,988,682	△1,573,005
합 계	-	-	74,584,460	-	63,699,938	△5,884,522

※ 부산○○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나. 하수관로 품질확인(CCTV조사) 부적정

정부합동감사 시 “○○○관광단지 조성공사” 준공 당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우수관로 CCTV 촬영조사 총괄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토사퇴적 구간 59개소 등이 확인되었음에도 이상항목에 대한 조치 및 CCTV 재촬영을 실시하지 않고 준공하였으며, CCTV조사 성과품을 분석한 결과, 결함부위 등(연결부, 파손부위

등)에서 촬영을 멈추고 360°회전 촬영(측시)을 실시하지 않았고, CCTV촬영 후 이상항목 현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결함 이상항목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토사퇴적 항목에 대한 이상항목만을 집계하는 등 CCTV조사 성과물에 대한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표 5】 우수관로 CCTV 조사결과 이상항목 집계현황

조사자	조사일	조사연장	이상항목			
			대	중	소	계
(주)○○○○○○○	2015.5.9. ~ 6.20	8,930.1m (221개 구간)	7	33	19	59

※ 출처 : ○○○관광단지 조성공사 우수관로 CCTV 촬영조사 총괄보고서

【표 6】 우수관로 CCTV조사 부적정 현황

구 분	시방서 및 매뉴얼상의 기준	실제 검사현황	감사 시 지적사항
이상항목 조치	이상부분 확인시 보수 및 재시공, 이상항목 확인 촬영	토사퇴적(59개소) 등 이상항목에 대한 조치 및 재촬영 미실시	CCTV조사 품질관리 부적정
측시촬영	연결관 및 이음부 등 이상부위에서는 멈추고, 측시 실시	이음부 및 연결부 등 측시 미실시	
보고서	조사·판독 결과를 종합하여 “결함 이상항목 보고서” 작성	“결함 이상항목 보고서” 미작성	

※ 부산○○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부산○○공사 ○○○○부 ○○○○○처는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등에 따라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기성 및 준공검사 과정에 입회토록 하여 기성 및 준공 검사자가 계약서, 시방서, 설계서 등 관계 서류에 따라 기성 및 준공 검사를 실시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했음에도, 준공 시 시공의 적정성 여부 및 책임감리용역 등의 계약내용 이행여부에 대한 검수·확인 등의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여 하수관로 품질이 부적정한 상태로 시설공사를 준공하였고, 하수관로 품질검사 대가 5,885천 원을 과다하게 지급하였다.

위와 같이 “하수관거신설(확충)공사[○○처리구역(○○○일원1)] 준공 부적정”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국 ○○과 지방○○○○○ ○○○과 “○○○관광단지 조성사업 내 하수관로 설치공사 준공 부적정”과 관련하여 부산 ○○공사 ○○○○본부 ○○○○처 토목○급 ○○○은 각각 실무책임이 있다.

조치할 사항 부산광역시장, 부산○○공사 사장은

[훈계] 위 관련자들을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① 하수관거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시공된 부위에 대하여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하시고, 계약상대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품질확인 대가 4,408천 원과 5,885천 원을 관련 규정에 따라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②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그 대가를 부풀려 청구·수령한 계약상대자와 이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책임감리업체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부실별점 부과 등 적의 조치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